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이주희 · 노종면 · 서미화

백승아 · 장종태 · 송재봉

최민희 · 이병진 · 박용갑

김승원 · 황정아 · 박해철

김기표 · 이광희 · 최혁진

김동아 · 김윤 · 김선민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돋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게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u>6개월</u>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p> <p>2. ~ 4. (생 략) ② (생 략)</p>	<p>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 ----- ----.</p> <p>1. -----1 년----- --</p> <p>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